



의안번호	제115호
회의 연월일	2025. 9. 29. (제573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5. 9. 16.

인사담당관, 인사운영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업무대행자 지정에 있어서 인원수의 제한을 폐지하여 업무대행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개선(인원제한 폐지)(안 제33조의3)

현행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인원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도록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생 략) ② <u>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 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u>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 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 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